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2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09호, 2013. 6. 2. 공포, 2013. 8. 6. 시행)됨에 따라 대학 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인프라 구축과 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투자 촉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창업촉진사업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의3)

창업촉진사업에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관련 정보 제공, 창업 공간 확보를 포함

##### 나.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제7조의2)

- 1)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범위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100로 규정하고, '임대료' 용어를 '사용료'로 대체
- 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범위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100로 규정

다.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범위 및 회계처리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의3, 제7조의 4)

- 1)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세부업무로 창업지원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창업 교육 및 확산,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기구의 전담 관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실험실공장 등 지원, 창업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 창업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훈련 등을 규정
- 2)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회계 처리의 기준을 규정

라.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규정함(안 제9조제 6항)

창업투자회사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으로 최근 3년 간 금융 관련 형사처벌 전력과 채무불이행 등이 없을 것, 최근 5년 간 영업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을 규정

마.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7항 제1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을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으로 인정

바.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의 거래금지 예외대상을 확대함(안 제10조제4항제1호)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의 거래금지 예외 대상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자를 포함

사. 대주주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10조제6항)

‘특수관계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투자 의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1항·제16조제1항)

투자의무기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투자의무비율만 규정

자. 사업계획승인의 변경 대상을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사업계획 승인의 주요 변경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장용지를 다른 창업자가 인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업종의 변경,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변경,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을 규정

차. 부담금 면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안

제29조의2제2항)

부담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창업자는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알려주도록 규정

카. 재택창업시스템 설치·운영의 절차·방법을 규정함(안 제29조의3)

재택창업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회사설립등기 업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의무, 사업자등록 업무,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 등을 규정하고, 동 시스템의 설치·운영을 창업진흥 전담 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타. 창업투자회사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비함(안 제31조)

중기청장이 별도로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파.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후 1년간 미투자 행위에 대한 규제의 예외 요건을 마련함(안 제31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1년간 미투자 행위에 대한 규제 예외로 인정

###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09, Fax : 042-481-3972)

대통령령 제            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법 제4조의2제2항”을 “법 제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시제품 제작 지원
2. 창업 관련 정보 제공
3. 창업 공간 확보

제7조의 제목 중 “임대료”를 “사용료”로 하고, 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임대료”를 “사용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100분의 1이상”을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료”를 “사용료”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재산 평정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 지원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2. 창업 교육 친 확산
3.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 기구의 전담 관리
5.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연계지원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실험실공장 등 지원
7.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8.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9. 그 밖에 대학 내 창업 관련 각종 지원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회계처리)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제1호바목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관련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9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제10조의 제목 중 “창업투자회사”를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하고, 제4항 제1호라목2)카)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투자 활동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자

⑥ 법 제15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비율)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장용지를 다른 창업자가 인수하는 경우
2.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업종의 변경
3.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해당 법률이 정한 변경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4.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해당 법률이 정한 변경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29조의2 본문 중 “법 제39조의2”를 “법 제39조의3제2항”으로 하고, 본문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창업자는 제2

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어 창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운영 등) ①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하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
5. 그 밖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을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진흥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경영건전성 기준 등”으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경영건전성 기준 등) 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일 것과 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등록취소 예외사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를 이행한 경우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원으로 있는 창업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에 투자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생략)</p> <p>② 중소기업청장은 <u>법 제4조의2제2항</u>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내용</li> <li>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li> <li>3. 사업성과의 활용</li> <li>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④(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5조의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중소기업청장은 <u>법 제4조의2제3항</u>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내용</li> <li>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li> <li>3. 사업성과의 활용</li> <li>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④(현행과 같음)</p> <p>제5조의3(창업촉진사업) <u>법 제4조의2제1항제4호</u>에 따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제품 제작 지원</li> <li>2. 창업 관련 정보 제공</li> <li>3. 창업 공간 확보</li> </ol>
<p>제7조(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① <u>법 제6조제2항</u>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u>100분의 1 이상</u>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p> <p>② 동일한 입주자(<u>법 제6조제2항</u>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p>	<p>제7조(국유재산 <u>사용료</u>의 감면) ① -----<u>제3항</u>----- ----- <u>사용료 중 대통령령으로</u> <u>정는 금액</u>----- -----<u>100분의 1</u>----- ----- -----</p> <p>② ----- -----</p>

말한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신 설>

<신 설>

-----  
-----  
----- 사  
용료-----사용료-----  
-----

-----사용료-----,  
제7조의2(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재산 평정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제7조의3(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지원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2. 창업 교육 및 확산
3.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 기구의 전담 관리
5.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연계 지원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실험실공장 등 지원
7. 창업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신 설>

제9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 ⑤ (생략)

<신 설>

8.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9. 그 밖에 대학 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4(회계처리)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9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⑥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 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 마. (생략)

바.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사. (생략)

2. (생략)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 ③ (생략)

④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⑦ -----  
-----  
-----  
-----

1. -----  
-----  
-----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  
-----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0조(창업투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 다. (생략)  
라.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본인인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생략)
- 2)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정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가) ~ 차) (생략)  
<신설>

3) ~ 4) (생략)

2. ~ 8. (생략)

⑤ (생략)

<신설>

제11조(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투자 활동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5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1조(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제16조(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생략)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장용지를 다른 창업자가 인수하는 경우
2.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업종의 변경
3.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된 인·허가 사항 중 해당 법률이 정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29조의2(부담금 면제 관련 자료의 요청) <신 설>

<신 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4.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해당 법률이 정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29조의2(부담금 면제 관련 자료의 요청)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창업자는 제2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어 창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3-----  
-----  
-----  
-----  
-----  
-----,-----  
제29조의3(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

운영 등) ①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하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
5. 그 밖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을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진흥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의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이상이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경영건전성 기준 등) 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일 것과 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등록취소 예외사유) 법 제43조제1항제3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한 경우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원으로 있는 창업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에 투자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연 락 처	(042) 481 - 4409